7년간 침해 당한 공업소유권 (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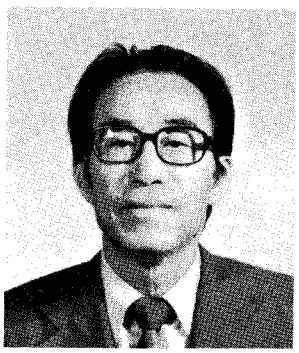

禹元命
〈發明人〉

〈前号에서 계속〉

4. 침해자의 계략으로 보호받지 못한 공업소유권

공업소유권은 본인들과 같이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결론을 얻기는 하였으나 권리보호기간이 계속 진행하여 본인들은 물질적 손해와 아울러 회복할 수 없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침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본인들의 권리를 복사침해하여 경고를 받고도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침해자의 계략대로 판결을 얻음으로써 심결기간을 이용하여 권리기간을 계속 침해하려 하였다.

특히 본인들의 고안 도면과 다르고 침해제품과도 다른 도면을 그림으로써 심판부를 심리미진으로 빠뜨렸다.

자세히 살며보면, 침해제품의 뚜껑 천정에 삭설된 패킹 삽입홈 구조가 등록고안과 같이 상광하협(⌐⌐) 삼각형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가)호 도면은 상하동일폭(⌐⌐) 직사각형이라고 사위조작하여 그림으로써 계속된 심리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본인들의 도면상으로 나와 있는 "직선의 경사면과 단턱"이라는 구분된 설명이 있음에도 심판청구서에 "곡면으로 된 단턱"이라고 함으로써 초심 심판부는 오히려 "곡면으로 된 경사면이 있을 뿐 그 단부에 단턱이 없고"라는 사실과 다른 심리미진의 판결을 하게 되었다. 단턱(1b)은 실제로 패킹접촉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권리범위가 솥의 안지름을 점유하는 경사면과 경사면 깊이 밀착하는 현수식 패킹의 구성을 통한 밀폐효과였는데 그리고 실제로 침해자의 패킹이 현수식 형태를 갖고 경사면에 닿아서 기밀효과를 일으키는데도 (가)호의 패킹삽입홈에 패킹이 붙어 있을 수 없도록 패킹의 삽입홈을 변조함으로써 심판부의 판단을 흐리게 하였다.

여기에서 패킹의 사선과 수직형에 대하여도 살펴보면, 이들은 동일성의 구성으로 작용효과가 동일한 것으로 사용전에는 수직과 사선이 다르게 보이지만 솥안의 온도가 높으므로 압력까지 곁들여 실리콘 고무 연질로 된 패킹의 매달린 상태는 솥전의 경사면과 같이 사선형으로 변형된다. 덧붙여 본인들이 금상 수상시에 만든 압력솥의 패킹이 수직형이었다는 사실은 이것이 동일성의 구성이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침해자가 경고를 받을 당시에 생산한 것이 이미 8.5 *l* 짜리 800개(이제부터 나오는 숫자는 대구지방 공업시험소에서 사전검사를 받은 수량으로 실제 생산한 것은 이 수량에 비할 수 없는 많은 수량이 생산되었다.)이고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후 특허청 심판소 심결이 나오기까지에 8.5 *l* 짜리 943개와 7 *l* 짜리 110개를 생산함으로써 심결기간을 최대한 이용했다는 것이 드러

난다.

그리고 84년도에는 생산이 없다고 하고 85년도에는 특허청 항고 심판부의 심결이 나오기전에 7 l 짜리 400개를 생산하고 심결후에 5.5 l 짜리 1300개를 생산하였다고 하였다.

하지만 대구지방 공업시험소의 사전검사 받은 실적표에 나오지 않는 무학압력솥 4 l 짜리를 전주에서 1987년 3월 18일에 구입한 사실을 살펴보면 4 l 짜리도 생산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같은 날 구입한 5.5 l 짜리의 무학압력솥은 검사필증조차 없었다. 이것과 함께 86년 10월 공업진흥청 사전검사 미필제품 일제 단속에서 무학압력솥이 적발되어 1986년 11월 21일 전주시장이 대구시장 앞으로 고발을 이첩한 사실이 있어 계속하여 생산한 사실도 드러난다.

그리고 더욱 침해자의 악의를 드러내는 것은 1차로 현수식 밀폐방법인 실용신안 제17751호 고압솥 뚜껑의 밀착장치를 침해하고도 특허청 심판소에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얻어내자 공업소유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자신만만하게 2차로 본인들의 실용신안 제22154호인 압력솥의 뚜껑 개폐 정착장치와 실용신안 제30011호인 집열통을 부착한 압력솥 뚜껑 안전 개폐장치 그리고 의장 제47061호인 압력솥 등 3건의 공업소유권을 추가로 침해하였다. 이것은 이미 공업소유권의 침해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얻고는 공업소유권의 권리자를 가볍게 본 것이 아닐 수 없다.

1987년 2월 10일 권리범위 확인에 대한 상고판결에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 심판부로 환송한다는 대법원의 선고가 있은 후 본인들은 무학압력솥 4 l 짜리와 그에 대한 구입영수증, 변리사의 감정서를 첨부하여 1987년 4월 3일 대구시 경찰국에 고발하였다(87형 77호).

이것은 1차침해와 2차 침해를 모두 적시한 것으로 1987년 6월 4일 "실용신안법 위반"등으로 불기소 처리되어 대구지점으로 이송됐다(87형 19363). 1987년 7월 27일 특허청 항고 심판소에서의 재심판결은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당초 특허청 심결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권리침해라는 심결을 하였다. 그런데도 침해자는 특허청 재심 심결후 30일내 확정되지 못하도록 1987년 8월 28일자로 대법원에 상고(87 후 104호)함으로써 법적인 기간을 최대한 이용하였다. 이것은 3개월후에 침해자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한데서 드러난다.

1차침해의 민사사건과 2차침해의 형사사건은 내용이 다른데도 대법원에 계류중인 민사사건의 결과를 보고 판결한다는 재판장의 판시로 보류돼 오다 1989년 6월 13일 대법원이 침해자의 불복상고를 기각하자 1989년 8월 22일에 이미 증거에서 나타나는 것 같이 엄청난 생산숫자를 도외시하더라도 그리고 침해자가 공문서상 나타나는 3,553개를 인정하였는데도 대구지방 공업시험소의 사전검사 받은 수량인 1983년 1,853개와 1985년 1,700개중에서 83년도분 1,853개만을 지적하여 실용신안권 침해로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것은 명백히 공문서상으로 나와 있는 숫자까지 줄인 결과이며 사전검사 미필제품 등 수십배의 수량은 증거불충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었다. 그런데도 침해자와 법정대리인은 이마저도 책임지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8월 28일 다시 항소를 하였다(89 소 1480).

위와 같이 법으로 허용된 심결기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침해자는 얻은 이익을 숨길 수 있는 시간까지 얻었다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에 비하여 본인들은 권리의 침해로 인하여 7년간 본업에 지장을 가져오고 예상되는 수익이 동결되고 소송으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과 함께 억울함에서 오는 정신건강상 피해에서 오는 손실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 맺는말

첫째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청구의 취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바른 판단이 나온다는 것이다.

침해자와 법정대리인은 심판청구의 취지에서 "압력솥의 기밀장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에도 그들의 (가)호 도면에서 경사면의 곡면과 패킹의 수직형을 강조하고 실제 기밀에 중요한 상광하협의 패킹삽입홈을 패킹이 고정될 수 없는-그래서 기밀이 될 수 없는-형태로 사위하여 그려내어 심판부를 심리미진으로 끌고 갔다는 것이다. (가)호 도면이 기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의 생산제품이 상광하협형의 패킹삽입홈을 가졌다는 데서도 드러난다. 이것은 침해자의 계략으로 인한 심리미진의 초심 판결문과 항고심 판결문에서 "양자는 그 기밀효과가 판이하다고 인정된다"고 한 것은 오히려 침해자의 (가)호 도면은 압력솥이 아니라는 결론과 같으므로 청구의 취지에서도 벗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로,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에서는 권리자의 도면이 중심적인 판단대상이 되어야함에도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본인들의 실용신안에서 분명히 "경사면"과 "단턱"을 구분하였는데도 침해자와 법정대리인은 "곡면으로 된 단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실제 중요한 경사면을 거론치 않고 경사면의 형태와 실제 기밀과도 관련없는 단턱을 강조하여 심판부를 흐리게 하였고 그래서 초심 심판부가 "곡면으로 된 경사면이 있을 뿐 그 단부에 단턱이 없다"라는 심리미진의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었다. 침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불복상고이유서에서조차 본인들 고안은 경사면 하단에 단턱이 있으나 (가)호에서는 전체가 곡면으로된 구조로 상이하다고 주장하여 심판청구서에 거론한 "단턱"이라는 용어조차 사용하지 않음으로 곡면을 더욱 강조하여 여전히 심리미진을 유도하려는 계략을 드러내었다.

세째로, 심결기간을 최대한 이용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에서 본인들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얻자 계속적인 제품의 생산으로 이득을 얻고, 또한 상고심과 특허청 항고 심판부의 재심에서 침해라는 판정을 얻자 1987년 8월 28일 불복상고하여 1989년 6월 13일 기각판결이 있을 때까지 재산을 도피할 수 있는 22개월의 시간을 얻어내었다. 이것은 침해자의 상고 이유서에서 그때까지의 주장과 함께 권리범위 확인심판 초심에 제출하여 판단이 거절되었던 두 개의 일본 실용신안중의 하나인 소 52-154359호를 대법원에 다시 제출하여 본인들의 권리를 공지의 사실로 하려했다는 데서도 드러난다 하겠다.

네째로, 발명풍토조성 또는 발명인 사기진작, 선진기술의 개발 등의 구호는 공업소유권에 대한 적절한 보호없이는 헛 구호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악의의 침해자와 법정대리인이 도면을 사위하고 실제 청구취지에 합당하지 않는 부분적 상이를 강조하여 권리를 침해하겠다는 계략, 청구의 취지와 권리자의 실용신안 도면의 이해도 없이 본인들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이끈 특허청 초심과 항고심의 결정, 이러한 결정에 힘입어 2차로 추가하여 실용신안 2건과 의장 1건을 자신있게 침해한 침해자의 의도,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특허청 항고 심판부의 심판기각 판결을 받고도 초심에 제출하여 채택되지 않은 증거를 다시 대법원에 증거로 불복상고하게 하여 침해자의 재산을 도피할 수 있는 22개월의 시간을 갖게 만든 법정대리인의 역할, 일반 사건보다 항상 밀려 취급되는 공업소유권 침해사건에 대한 법원의 태도, 증거와 함께 제출된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경찰국의 불기소 처리 등은 이것을 잘 나타내어준다 하겠다.

공업소유권은 권리의 보호기간이 정해져 있고 또한 개인의 재산권이므로 그 법적인 보호가 얼마나 필요한지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

※ 11월호 73면 1단 20행 (1)은 (3)으로 바로 잡습니다.